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민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1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 : 이민석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석주, 김길영, 김동욱,
김원태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유만희,
이상욱, 임춘대, 최민규,
허 훈, 홍국표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도로관리청이 추진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도로공간재편사업 과정에서 기존 보도가 확장됨에 따라 인근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 기존 도로점용 허가 면적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가하게 되고, 이로 인해 시민이 부담해야 할 점용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공공사업 추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증가한 점용 면적에 한하여 진입로·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,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사업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도로공간재편사업으로 점용 면적이 증가한 진입로·출입로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신설함(안 별표1 제1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 및 시행령,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등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
	점용단위	기간단위	
1. 영 별표3 제3호에서 정한 점용물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표 1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점용물의 종류</th> <th colspan="2">기준단위</th> <th rowspan="2">점용료 (단위 : 원)</th> </tr> <tr> <th>점용 단위</th> <th>기간 단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5">1. 영 별표 3 제 7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</td> <td row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용 면적 1㎡</td> <td row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>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3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2. 영 별표 3 제 11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</td> <td row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용 면적 1㎡</td> <td row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>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3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	점용 단위	기간 단위	1. 영 별표 3 제 7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3을 곱한 금액	2. 영 별표 3 제 11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3을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별표 1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점용물의 종류</th> <th colspan="2">기준단위</th> <th rowspan="2">점용료 (단위 : 원)</th> </tr> <tr> <th>점용 단위</th> <th>기간 단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영 별표 3 제 3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용 면적 1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>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2. 영 별표 3 제 7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</td> <td row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용 면적 1㎡</td> <td row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>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3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3. 영 별표 3 제 11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</td> <td row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용 면적 1㎡</td> <td row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>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3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	점용 단위	기간 단위	1. 영 별표 3 제 3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2. 영 별표 3 제 7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3을 곱한 금액	3. 영 별표 3 제 11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3을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점용 단위	기간 단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영 별표 3 제 7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3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영 별표 3 제 11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3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점용 단위	기간 단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영 별표 3 제 3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영 별표 3 제 7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3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영 별표 3 제 11 호 에 서 정 한 점용물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3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※ 비고</p> <p>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시장·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/100을 경감한다.</p>				<p>※ 비고</p> <p>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시장·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/100을 경감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[별표1] 점용료 산정기준	△	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을 하향조정함에 따라 세입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안 [별표1]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 세입감소액은 서울시 관련부서(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) 문의결과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되는 사업의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작업 시기가 매년 3월까지이므로 현 시점(2월)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[참고]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

- 추계를 위한 자료조사 결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료수합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세입감소액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, 또한 점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달라지므로 평균적 추이(공기, 구간 등 상이)를 고려한 합리적 추계도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주 무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35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